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46호 2018. 8. 6.(월)

훈 령

-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

공 고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기 타

- 시정알림판 ----- 23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813호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8월 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③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회의)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회의) ② ----- ----- 과반수 ----- -----
<신 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개정 전문 】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목포시(이하“시”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외부위원으로 대학교수, 기술사, 전문기술자 등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 소속 공무원은 도시계획과장, 하수과장, 건축행정과장, 수도과장으로 한다. 다만, 조경, 기계,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5급으로 하고, 5급이 없을시에는 해당분야 6급 1명을 각각 추가한다.
- 2.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기술사 등 15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 (임기)

위원회의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위원의 임기는 보직당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간사는 토목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 (회의)

-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전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 신청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간사를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건설기술 심의 대장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회의참석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전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건설기술심의 대상)

- ①건설기술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실시설계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 되는 공사
 - 3. 건설공사 중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진단 등
 - 4. 기타 시장이 심의 요구한 공사
- ②실시설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도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1건으로 설계하여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의 공사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하

나의 개소라도 도로굴착 길이는 50미터, 옹벽 등 구조물 시공연장은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소별 사업규모가 작은 건설공사

2. 건물보수공사는 기둥, 보, 지붕틀 등 건물의 중요부분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보수·수선하는 공사

3. 실시설계 금액이 5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도급예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구조물의 모형과 소요자재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선정하였거나 관급자재대가 설계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공사

4.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증액과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 또는 공법 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

③ 삭제

제9조 (심의범위)

①기본계획의 적정여부

②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여부

1. 종합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기초 토질조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5.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6.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10조 (심의신청)

①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설명서

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및 주요자재 채택사유

3. 제구조 단면과 규모결정 산출서, 단, 기본계획상 구조물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건설부 제정표준도에 의하여 설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 변경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제2항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제4항의 검토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이 건설기술을 사전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지정하여 설계도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위임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면 제출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설계변경 심의 등)

①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위원 3인 이내를 지정하여 검토 요청 받은 안건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및 검토하도록 한다.

③지명을 받은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현장 점검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 검토한 사항을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보완하여 제10조제2항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할 실, 과, 소장은 설계자와 심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 의결하여 통보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 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착공전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설계의 책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당초 설계자와 심의자의 설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출석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수당 : 건설기술심의 1안건당 15,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6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5 훈39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8.7 훈43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8.5 훈5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7 훈55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8 훈59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8.16 훈6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7 훈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 칙 <2013.6.24 훈74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목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건설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⑫, ⑬ (생략)

부 칙 <2016·11·28 훈7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공고 제2018-1042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경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전 부 면제에 대한 특혜 소지 개선 및 감경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5항)
-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80의 범위로 일부 감경 확대로 규제완화 (안 제16조 제2호~제9호)
- 프로스포츠 구단 및 국제 운동경기대회 등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0호~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항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안 제12조, 안 제16조

8. 입법예고 기간 : 2018. 8. 6. ~ 8. 27. (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 체육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하는 곳

우 58613,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장(참조 : 체육시설관리과)
전화번호 061)270 - 4092, 팩스 061) 270 - 8302

다.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체육시설관리과(☎061-270-4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

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9.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10.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1.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 고
		일시사용		주 간		일시사용		주 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유 달 경기장	필드	70,000	9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00,000	240,000	동시사용 2할 감
	트랙	30,000	50,000	50,000	7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목포실내 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야간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사용 5할 가산
목포시궁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고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u>경노어린이</u> <u>국가유공자 등</u> <u>장애인</u> <u>수급자</u>	어른	청소년 군인	<u>경노어린이</u> <u>국가유공자 등</u> <u>장애인</u> <u>수급자</u>	
유 달 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u>목포살내</u> <u>체육관</u>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강습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u>부주산</u> <u>국제파크</u> <u>골프장</u>	1인당		2,000	1,000	1,000	1,000	500	500	36홀 사용료
목포시 궁도장	2시간 기준		2,000	1,000	1,000	1,000	500	5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① ~ ④ (생 략)	제12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 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 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 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 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 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남도 또는 목포시 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
3.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 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 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 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 선경기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9.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

<u>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u>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학교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1.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u>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u> 10.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1.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 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1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참고 1**관계법령 발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9호, 2016.8.2.,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544호, 2017.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시 정 알 림 판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사전 예매 안내

○ 신청기간 : 2018. 8. 20.(월)까지

○ 입장요금

구 분		가 격		적용 범위
종류	대상	사전예매	본판매	
보통권		8,000	10,000	· 성인(만19~64세) ※ 쿠폰(3,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티켓링크 1588-7890(www.ticketlink.co.kr)

- 오프라인 : FAX(061-280-5865)

☞ 신청서식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http://sumukbiennale.org>)

※ Fax 또는 전자문서 신청 불가 시 전화 061-280-5885 신청 또는 카톡 가능

○ 관람기간 : 2018. 9. 1.(토)~10. 31.(수) 09:00~18:00 ※ 월요일 휴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운영부 ☎ 061-280-5882

2018년 기초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8. 13.(월)부터 사전 신청 시작

가구원수	3인 이상	2인	1인		미신청자
신청기간	8. 13. ~8. 17.	8. 20. ~8. 24.	40대 이하	8. 27.~8. 31.	9. 24.~
			50대	9. 3.~9. 7.	
			60대	9. 10.~9. 14.	
			70대 이상	9. 17.~9. 21.	

※ 신청 초기를 피해서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

(단위 : 만원/월, 2018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72	122	158	194	230	266

※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비급기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자가진단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자가진단 ⇨ 통합진단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시 정 알 림 판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18. 8. 6.(월)~9. 28.(금) [54일간]
- 조사방법 : 세대 방문 조사
-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신고 여부 관리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의 사망의심자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조사
 - 거주불명등록요청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자진 신고 시 최대 75% 경감
 - ※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세대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기간 : 2018. 8. 10.(금)~8. 31.(금) [20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방문 열람
 - ※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 8. 10.(금)~8. 31.(금) [20일간]
 - 제출사항 : 열람한 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개별주택) 2018. 1. 1.~5. 31.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공동주택)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목포시청 세정과, 한국감정원 광주지사(공동주택 限)
- 제출방법 : 목포시청 세정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에 기재
- 문의사항
 - (개별주택) 목포시청 세정과 과표담당 ☎ 061-270-8207, 8208
 -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 062-953-1300